[OSS 라이선스 이슈사례]
엘림넷vs하이온넷 최종결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글과컴퓨터 컨소시엄

<문서 정보>

일자	VERSION	변경내역	작성자
2008.11.30	1.0	내용 작성	박준완

목 차

1. 문서 개요 4
가. 문서의 목적 4
나. 참고사항 4
2. 공개SW 라이선스 신규 이슈 정보 5
가. 이슈사항 5
다. 이슈내용 5
3. 이슈 사항이 공개SW에 미치는 영향 7
4. 참고사항 9

1. 문서 개요

본 문서는 공개SW 도입컨설팅 사업의 공개SW 라이선스 분석지원 사업을 통해 현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라이선스 사례 및 신규 라이선스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가. 문서의 목적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 라이선스 사례 및 신규 라이선스 이슈 정보 제공

나. 참고사항

○ 공개SW 라이선스의 시장 변화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 기존 공개SW 라이선스에 대한 분쟁 사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2. 공개SW 라이선스 신규 이슈 정보

가. 이슈사항

구 분	내 용	비 고
이슈 정보	엘림넷과 하이온넷의 분쟁 판결 결과 국내에서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련 최초의 법적 사건	
발표 일자	2005년 9월 6일 법적 분쟁 시작 2006년 9월 29일 민/형사 소취하서 제출로 사건 종료	
홈페이지		

나. 이슈내용

주식회사 '엘림넷'에 근무하던 개발자인 H씨는 GPL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VTun을 토대로 ETun을 개발하였다. H씨는 2004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R&D팀, 기술운영팀, 영업팀에서 9명의 다른 직원과 함께 하이온넷 주식회사로 직장을 옮겼다. 이 과정에서 H씨는 ETun의 소스코드를, 다른 직원들은 고객 자료와 회원 이용계약서 등 엘림넷의 내부 중요 서류를 가지고 갔다. 하이온넷은 ETun을 토대로 한 프로그램(HL)을 이용하여 엘림넷과 동일한 사업을 시작했다.

엘림넷 측은 하이온넷의 사장과 직원 세 명에게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을, 하이온넷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와 손해 배상을 목적으로 민사 소송을 걸었다.

2005년 9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재판 1심에서 하이온넷 H씨 외 3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실제 담당 판사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 "판결문에서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의 오픈소스 라이선스 규칙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이어 H씨 등이 공개소스를 바탕으로 유출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해도, 엘림넷에 의해 중요한 기능이 개량 내지 향상된 측면이 있다. 엘림넷에서 비밀로 유지 · 관리되던 기술상 정보로 일반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던 소프트웨어이므로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

2005년11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재판 2심에서 하이온넷 H씨 외 3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2006년 9월28일
엘림넷과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다래 사무실에서 김준성 변호사의 입회하에 본 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소송도 추가로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2006년 9월29일
엘림넷은 상기 합의서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형사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은 ETun이 GPL 소프트웨어이므로 소스코드를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형사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제출해 달라는 H씨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번 사건에 대해 개입하기 시작했다. 먼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GPL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으면서도 GPL 조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엘림넷과 하이온넷 양사에 대해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고 ETun, HL의 소스코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형사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ETun이 GPL 라이선스를 따라야 하며 소스코드가 자유롭게 공개되어야 하므로 ETUN 소프트웨어 자체는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하이온넷 H씨는 수사과정에서 죄를 경감할 목적으로 GPL을 주장하며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요청에 따라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사과문을 게재하였다.

엘림넷은 H씨가 재직 중 특허출원했던 Etun이 GPL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는 것을 수사과정에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소송 진행 중에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을 자유소프트웨어재단 측에 전달하였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 측은 엘림넷이 ETun이 GPL에 따라 소스를 배포해야 함을 알고 있으면서 배포하지 않고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오인하여 엘림넷에 여러 형태(내용증명,이메일,방문 등)의 압박을 가해 왔으나[1], 하이온넷 H씨 외 3인 명의로 2006년 9월 28일자 KLDP 게시판 및 10월 2일자 전자신문에 게재한 아래의 공개 사과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H씨는 퇴사 후에도 엘림넷에 소스코드조차 인계하지 않았으며, 엘림넷이 피고들을 고소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Etun 소스코드를 인계 받기 위함이었다. 결국 엘림넷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H씨의 노트북에 보관되어 있던 소스코드를 검찰의 도움을 받아 인계 받을 수 있었다.

공개 사과문(2006. 9. 28 KLDP 게시판 및 2006. 10. 2 전자신문 게재)
1. 본인들은 2004년 11월 주식회사 엘림넷과 동일한 사업과 영업을 개시하면서 다수의 영업·운영·개발 인력을 이동시키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엘림넷에 손실을 초래케 한 점
2. 주식회사 엘림넷 퇴사 시 VPN 핵심 소스코드의 인계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

3. KLDP BBS를 통해 주식회사 엘림넷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을 뉘우치며, 주식회사 엘림넷 임직원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이온넷 H씨외 3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따르면, 본 사건은 단순한 소스코드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포함한 집합적 기술적 노하우, 인력, 영업비밀 등을 대거 유출하여 후발업체인 하이온넷의 VPN사업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엘림넷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했던 부정한 범죄행위로 판시하였다.

최종판결문
ETUND는 비록 공개된 소프트웨어인 VTUND를 기반으로 개발된 것이라 하더라도 엘림넷에 의하여 중요한 기능이 개량 내지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 기술상의 정보로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임이 분명하고,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독립된 경제적 가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며(피고인 H씨 스스로도 검찰에서 ETUND 중 새로운 아이디어가 추가된 부분은 엘림넷의 소유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P씨도 검찰에서 엘림넷의 기술을 이용한 것이 개발기간을 2개월 정도 단축한 효과는 있다고 진술하였음), 이른바 오픈소스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GPL 라이센스 규칙이 이 사건에 있어서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문의 양형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건번호: 2005고단2806) "피고인들은 VPN 서비스업체 중 최신기술을 보유한 엘림넷의 기술상, 경영상, 영업비밀을 대거 유출하여 후발업체인 하이온넷의 VPN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엘림넷의 존립 자체에 위해가 될 만한 범행을 저질렀고,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이라는 단체로 하여금 법원의 재판에 압력을 행사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함. 특히 피고인 H씨는 엘림넷 직원들의 전직을 주도하면서 VPN 구동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포함한 핵심적 영업비밀을 유출하였음에도 범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

3. 이슈사항이 공개SW에 미치는 영향

이 사건은 국내 첫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련 판례라 볼 수 있으므로 대단히 의미있는 판결이다.
이 판결문의 내용을 토대로 보면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해 아직 국내 법조계에서는 저작권법에 대한 부분을 우선으로 하여,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법적 구속력이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아직까지는 GPL등 오픈소스라이선스를 철학적인 의미 그 이상으로써는 보고있지 않는 듯 하다. 향후 오픈소스 시장의 변화와 업계의 대처방안등이 많은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우리가 잘 아는 CCL의 경우 미

국에선 법의 보호를 받는 잘 갖춰진 라이센스이지만 이것을 국내실정법에 맞춰 국내에 도입하기까지 정보법학회(KAFIL)에서 2년이상의 검토기간이 소요되었고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입된것은 불과 얼마전의 일이다.

GPL이 철학의 수준을 넘어 법률의 수준으로 격상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안타까운 일의 재발을 막기위해서 그리고 그동안의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기위해서라도 GPL또한 CCL과 같이 국내실정법에 근거한 법률적인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 역시 쟁점은 영업비밀에 대한 범위이다. 즉 어디까지가 영업비밀인가인데, GPL에서 요구하는 범위와 재판부에서 생각하는 범위가 다른 듯 싶다. 일단, 첫 판례에서 GPL의 범위는 인정되지 않았다.

4. 참고사항

출처

1 .
http://ko.wikipedia.org/wiki/%EC%97%98%EB%A6%BC%EB%84%B7%EA%B3%BC_%ED%95%98%EC%9D%B4%EC%98%A8%EB%84%B7_%EC%82%AC%EA%B1%B4

2. http://sio4.tistory.com/79
3. http://www.likejazz.com/29778.html
4. http://yong27.biohackers.net/index.php?pl=170